

축산물(계란) 등급판정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					
신청인	①성명	②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			
	③업소명						
	④주소	(전화번호:)					
축산물가공 영업소, 식용란선별 포장업소, 식용란수집 판매업소	⑤업체명	⑥사업자등록번호					
	⑦대표자						
	⑧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사육 농가	⑨성명	⑩생년월일(사업자 등록번호)					
	⑪농장명	⑫농장식별번호					
	⑬주소	(전화번호:)					
⑭접수번호	⑮이력번호	⑯품종	⑰일령	⑱산란일	⑲수량	⑳중량규격	㉑비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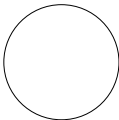
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㉒대리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)

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

수수료	납부확인
「축산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	

유의사항

- ① ~ ④란 및 ⑨ ~ ⑬란은 신청인이, ⑤ ~ ⑧란 및 ⑭ ~ ⑰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.
- ⑨ ~ ⑪란 및 ⑬란은 가족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"신청인과 같음"으로 적습니다.
- ⑫란은 「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.
-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(LOT)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.
- ⑮란은 「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.
- ⑯~⑱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⑳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